



교회자산과 경비

목록 2 연회에 보내는 개 교회 보고
연합감리교 재무행정 연합회
2009-2012 4 기년 - 2009 년 5 월 26 일 개정

연회교회번호 _____
 GCFA 교회번호 _____
 EIN(연방정부 세금번호.) _____
 주 _____ 목사 _____
 County _____ 교회 _____
 구역 _____ 지방회 _____
 _____ 년 12 월 31 일 마감 _____
 _____ 부터 _____ 까지 보고

- 36. 교회 소유의 대지, 건물, 비품의 시가 36)
 건물, 사택, 비품과 교회 사역을 위하여 목사에게 제공되는 사택에 관련된 자산을 포함한 예상 시가. 만약 사택이 한 교회가상을 사역하는 경우에는 그 사택의 소재지로 보고한다. 재산이 공동 소유인 경우(개 교회가 아니라) 소유 분이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정교인 수의 비례로 분배하여 보고한다. 주택이 사택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는 37 번에 보고하고, 이 보고를 위하여 건물의 감정을 받을 필요는 없다.
- 37. 교회가 소유하는 모든 다른 자산들의 시가 37)
 다른 모든 부동산과 동산, 예를 들면 교회에 속한 현금, 주식, 채권, 신탁, 유가증권, 투자이며, 모금 혹은 미래의 건축 기금을 위한 증여, 여타의 목적을 위한 재산과 투자 중 다른 곳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것의 예상 시가.
- 38. 교회의 자산을 담보한 부채 38)
 교회의 재산이나 자산 중 저당권 설정이 된 부채 금액.
- 39. 기타 부채 39)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담보 부채, 신용 카드, 신용장, 구입을 전제한 임대 계약 등의 현재 부채 액. 38 과 39 의 합계가 교회의 현 부채의 총 액수임.

요주의: 다음의 난(40.b + 41.b 부터 64)에 보고되는 경비들은 지난해 개 교회가 사용한 총 경비와 같아야 한다.

- 40.a 개 교회가 연회회계에게 지불 한 각종 할당 기금의 총 액수 40.a)
 이 금액은 모든 지방 회, 연회, 관할구회와 교회의 일반 기금 중에 개 교회가 연회 회계에게 보내야 할 할당 기금의 총액. 이 액수는 연회 회계가 제공 한다.
- 40.b 개 교회가 각종 할당 기금을 위하여 연회 회계에게 지불한 액수 40.b)
 이 금액은 개 교회가 모든 지방회, 연회, 관할구회와 일반 기금 중에 연회 회계에게 지불된 총 금액. 이 액수도 연회 회계가 제공 한다.
- 41.a 개 교회에 할당된 기금 중 지방 회에 직접 지불하도록 지정된 금액 41.a)
 이 금액은 지방 회에 직접 지불하도록 할당된 금액. 할당 금 중 연회 회계에게 보낼 금액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 41.b 개 교회가 지방 회에 지불하도록 할당된 금액 중 지불한 금액 41.b)
 지방 회에 직접 지불할 할당 금액 중 지불된 금액. 연회 할당 금액을 위하여 연회 회계에게 지불한 금액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 42. 연회 회계에게 지불한 일반 특별 선교헌금 (General Advance Specials) 금액 42)
 개 교회가 보낸 모든 일반 특별 선교헌금 금액. 연회 회계가 금액을 제공 한다.
- 43. 연회 회계에게 지불한 세계봉사 특별 선교헌금 (World Service Specials) 금액 43)
 개 교회가 보낸 모든 세계봉사 특별 선교헌금 금액. 연회 회계가 금액을 제공 한다.
- 44. 연회 증진 특별 사업 (AC Advance Specials) 을 위해 연회 회계에게 보낸 금액 44)
 승인된 연회의 발전 증진 사업을 위해 보낸 금액. 연회 회계가 금액을 제공 한다.
- 45. 연회 회계에게 보낸 청년 봉사기금 (Youth Service Fund) 액수 45)
 개 교회가 청년 봉사 기금으로 지불한 금액. 연회 회계가 금액을 제공 한다.
- 46. 연대 선교와 사역 (Connectional Mission and Ministry) 을 위하여 연회 회계에게 보낸 각종 기금 46)
 분담기금이 아닌 연회 회계에게 보낸 각종 연대 선교와 사역을 위한 기금으로 40.b 와 41.b 부터 45 까지 포함하지 않고 고등교육, 건강과 목회의 수혜를 위한 기금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 연회 회계가 금액을 제공 한다.
- 47. 연회 회계에 보내진 연회 특별주일 (AC Special Sunday Offerings) 헌금 47)
 연회특별주일 헌금으로 지불된 금액. 연회 회계가 금액을 제공 한다.
- 48. 연합감리교에 직접 지불된 금액 (연회 회계에게 보내지 않은) 48)
 개 교회가 직접 연합감리교 관련 기관 등으로 보낸 금액. 연회 회계에게 보낸 어떤 금액도 포함하지 말 것이며, 이것들은 42-47 에 보고 한다.
- 49. 연합감리교 밖의 기관이나 자선단체에 지불된 금액 49)
 개 교회가 지역 단체나, 기관이나, 비 감리교회 기관에 직접 지불한 금액.

50. 연회 회계에게 보낸 특별 주일 헌금 액수

다음의 년들은 여섯 가지 특별주일 헌금을 지출한 보고이다. 연회 회계가 금액을 제공 할 것입니다.

50.a 인종평등 선교주일.....	50.a)
50.b 나눔의 주일.....	50.b)
50.c 세계 평화 주일.....	50.c)
50.d 미 원주민 선교 주일.....	50.d)
50.e 세계 성례주일.....	50.e)
50.f 연합감리교회 학생주일.....	50.f)

51. 개 교회에 의해서 목사의 건강수혜 외에 다른 혜택을 위하여 직접 지불되는 금액..... 51) *

이 금액은 개 교회가 건강혜택을 제외한 목회적 수혜를 위해 지불한 금액이다. 이 금액에는 목사로 근무하지 않는 교회직원을 위한 혜택은 포함하지 않으나, 특수 목회를 위하여 감독이 지명한 경우는 포함한다. 목사의 봉급에서 공제했다가 다시 지불한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52. 개 교회에 의해서 직접 지불되는 목사의 건강 수혜금액..... 52)

이 금액은 개 교회가 목사의 건강수혜를 위하여 지불한 금액이다. 이 금액에는 목사가 아닌 교회직원을 위한 건강 수혜는 포함하지 않으나, 특수 목회를 위하여 감독이 지명한 경우는 포함한다. 목사의 봉급에서 공제했다가 다시 지불한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53. 목사에게 지불된 기본 사례금액..... 53) *

개 교회가 본 교회의 주임목사에게 지불된 사례의 총액이며, 이는 세금 연기 금액(IRS Section 403 b)과/혹은 봉급 액수에서 감면되는“cafeteria plan”(IRS Code Section 125 plan)으로 지불되는 금액도 포함한다.

54. 감독에 의하여 지명된 모든 부목사들에게 지불된 기본 사례금액..... 54) *

개 교회가 본 교회의 부목사들에게 지불된 사례의 총액이며, 이는 세금 연기 금액(IRS Section 403 b)과/혹은 봉급 액수에서 감면되는“cafeteria plan”(IRS Code Section 125 plan)으로 지불되는 금액도 포함한다.

55. 목사와 부목사들을 위하여 주택및 유틸리티에 관계되는 보조금 지불금액..... 55) *

목사들을 위한 주택 보조와 기타 유틸리티관련 보조비, 전기, 난방, 가구, 차고임대료, 봉사료(잔디, 청소 등), 기타 사택 관리를 위한 평상 경비로 지불된 총액. 포함하지 않을 것은 사택과 관계된 부채 상환, 대지나 건물 구입, 보수공사비, 중요 집기구입비 등. 그것들은 63 과 64 년에 보고한다.

56. 목사와 부목사들에게 지불한 증빙된 경비의 상환금액..... 56) *

이 금액은 목사들에 의하여 발생된 경비의 상환으로 목사들은 교회의 규정에 기록된대로 영수증이나 관련서류를 교회가 지불하기 전에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이들 경비에는 여행, 연장 교육, 서적, 출판물과 목회에 도움을 주는, 혹은 목사 개인의 발전을 위한 것 등이 포함된다. 개 교회 프로그램을 위한 경비의 상환과 운영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들은 아래의 61 과 62 년에 보고해야 한다.

57. 목사나 부목사에게 지불한 여타의 현금 보조금액 (증빙 할 수 없는)..... 57) *

교회와 목회자들간의 약속에 준해서 모든 목사들에게 지불된 현금보조 금액을 여기에 기입한다. 이 금액은 연회에 의해서 지정 되었거나 지불된 건강 혜택 및 보험료 (40b, 51, 그리고 52 에 보고된), 여행비, 연장교육, 서적, 출판물, 회원비, 기타 다른 목회에 도움이 되고 목사의 자질개발을 위해서 쓰여진 모든것을 포함한다. 개 교회 프로그램을 위한 경비의 보조금과 운영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들은 아래의 61 과 62 년에 보고해야 한다.

58. 집사들에게 지불된 사례와 수혜금액..... 58) *

개 교회가 교회의 특별사역을 위해서 집사들에게 지불한 사례와 수혜 금액. 이 보고에는 기본 사례, 수혜, 여행경비의 상환등과 주택, 각종 공과금의 보조금액 등을 포함한다. 현금이 아닌 수혜와 51-57 년에 보고된 것들은 포함하지 않는다.

59. 평신도 사역자에게 지불된 사례와 수혜..... 59) *

개 교회가 직분을 준 평신도 사역자에게 지불된 사례와 경비들. 이 보고에는 기본 사례, 수혜, 여행경비의 상환등과 주택과 각종 공과금의 보조금액 등을 포함한다. 현금이 아닌 수혜와 51-57 년에 보고된 것들은 포함하지 않는다.

60. 교회의 모든 다른 직원에게 지불된 사례와 수혜금액..... 60) *

교회가 평신도 사역자가 아닌 모든 직원들에게 지불된 월급, 수혜, 경비상환, 보조금의 총액. 51-57 년에 보고된 것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61. 개 교회 사업에 사용된 총 경비..... 61) *

개 교회 임원회, 사역자 협의회 혹은 이와 유사한 위원회의 관할 아래 행하여진 교육, 증거, 전도, 구제, 통신, 그리고 이외의 사역을 위하여 지출된 금액. 지역이나 국내의 비 감리교회단체 사역에 지출된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들은 49 년에 보고해야 한다.

62. 그 외의 교회 운영경비로 지출된 금액..... 62) *

사무용 경비, 건물 관리비와 보험료, 교회의 유틸리티 등의 현재 운영경비로 지출된 총액. 40b 혹은 41b-61 년에 이미 보고된 경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63. 부채, 용자, 건물용자 등의 원금과 이자로 지불된 총 액수..... 63)

용자에 대한 각종 지불금액. 금년 동안에 용자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것은 이곳에 보고하지 않는다. 이 금액은 용자한 목적에 부합하는 항목에 보고해야 한다.

64. 건물, 시설확충, 중요 집기구입을 위한 자산 경비로 지불된 금액..... 64)

여기에는 현금으로 지불된 것만 포함하며 용자를 받은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지불하여야 할 부채는 38 이나 39 년에 보고한다. 현금은 하였지만 지출되지 않은 경우(미래에 사용하기 위하여) 37 년에 포함하여야 한다. 새로운 재산과 건물 가격, 새로운 집기 혹은 가구의 구매 (울켄이나 악기, 온 냉방 장비, 부엌 장비, 음향장비, 가구)와 주요 보수공사비. 단기 임대료도 포함.

65. 개 교회가 지출한 모든 경비의 총 액수 (40.b 와 41.b 부터 64 까지의 합)..... 65)